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6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도읍·김태흠·구자근

추경호 • 유상범 • 유의동

한무경 · 안병길 · 조수진

윤창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의 결산에서 손실이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,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,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재무건전성의 유지)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의3(재무건전성의 유지) 공
	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
	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